자체훈련계획서

(앞쪽)

<u>성</u>	명		수민능독번호				
	훈련과정 탐색결과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직종	훈련방법	훈련기간		
1							
2							
3							
4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u>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u>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 <u>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u>, <u>일반고 특화 훈련과정</u>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 에서 200만원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u>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u>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u>초과분도 본인이 부담</u>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u>자비부담액은 반드</u>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 하여야 합니다.
- 3.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농협)로 직접 지급합니다.
 - ※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또는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u>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u>은 훈련종료일(중도탈락 포함) 다음날부터 <u>30일 이내 HRD-Net에</u> <u>수강평을 입력</u>해야 <u>지급</u>됩니다.
- 4. <u>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소득 및 매출액)</u> 변동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 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u>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u>해야 합니다.
- 5. **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 멸**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 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7.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훈련생의 <u>수강태도가 매우 불량</u>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 9.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취업한 이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0.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의 참여가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과정 종료 후 30일 이 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1.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12. 훈련생은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1. 소정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전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3.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4.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5.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 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	훈련개시일 까지

<기타안내>

- 1. 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됩니다.
- 2. <u>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u>하고, <u>카드</u>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체크는 훈련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훈련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자체훈련계획서 (작성예시)

(앞쪽)

성	성 명 홍 길 농		수민능록번호 000000-1234567		234567		
	훈련과정 탐색결과						
연번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린	변직종	훈련방법	훈련기간	
1	인하항공 직업전문학교	【일반고 특화】 항공기관(기계)정비7 자격증 취득과정 (AIG20200000278	E (15)	기 정비 0903)	집체훈련	2020.8.18. ~2020.1.13. (612시간)	
2							
3							
4							
_ 5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는 <u>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간 300만원</u>이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u>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4차산업 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u> 등은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지원**됩니다.
 - ※ <u>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u>, <u>일반고 특화 훈련과정</u>은 실제 소요되는 훈련비와 관계없이 계좌한도 에서 200만원을,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 훈련과정은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직종평균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비부담액은 반드** 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 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계좌(신한, 농협)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 하여야 합니다.
- 3.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출석한 일수만큼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위기간(1개월)이 종료되면 훈련기관에서 훈련장려금 지급을 일괄 신청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서 실제 출석일수 등을 확인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신한, 농협)로 직접 지급합니다
 - ※ **훈련장려금**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실업자 또는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 실업급여 수급기간(대기기간 미포함)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재직 중인 기간에 대한 훈련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u>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u>은 훈련종료일(중도탈락 포함) 다음날부터 <u>30일 이내 HRD-Net에</u> 수강평을 입력해야 지급됩니다.
- 4. <u>대규모기업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요건(소독 및 매출액)</u> 변동여부 확인을 위해 계좌발급일 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HRD-Net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u>훈련수강일마다 반드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u>하여야 하며, 내일배움카드 미지참 등 <u>본인 부주의로</u> <u>출석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어 훈련장려금이 미지급</u>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내일배움카드 등 출결관리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빌려줄 수 없으며, <u>부정출결 시 계좌잔액이 소</u> <u>멸</u>되고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u>카드사용이 중지</u>됩니다. 또한, 부정출결 이후 <u>지원받은 금액의 2배 상당 금액</u> **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뒤쪽)

- 8. 훈련생의 <u>수강태도가 매우 불량</u>하여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훈련기관은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습니다.
 - ※ 단,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수강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함
- 9.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창업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훈련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취업한 이후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수급받은 경우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10. 훈련생은 수강 중인 훈련과정의 참여가 종료(수료 및 중도탈락 포함)되면 해당과정 종료 후 30일 이 내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의 훈련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1.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숙련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훈련생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12. 훈련생은 규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훈련생 등록기간 내에 수강철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기간
1. 소정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전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3.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4.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5.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또는 소정훈련일수가 180일 미만 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원격훈련과정 및 혼합훈련과정	훈련개시일 까지

<기타안내>

- 1. 내일배움카드를 <u>신용카드로 발급</u>받는 경우에는 <u>초년도에 연회비가 부과</u>됩니다.
- 2. <u>내일배움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제휴카드사(신한카드 또는 NH카드)에 즉시 분실신고</u>하고, <u>카드 재발급 신청</u>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간 동안의 출석체크는 훈련기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좌발급을 중지하거나 계좌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계좌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좌의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체훈련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고용센터 내방일 기재 일 신 청 자 학생이름, 서명 (서명 또는 인)

	ີ ເ	P면계획	수립 및	자격증정보 탐색	결과표
※ <u>동일한 훈련 분야로만 작성</u> (동일 분야로 2개 과정까지 계획수립 기능)하고, 탐색 결정한 훈련기관의 과정만 수강 가능					
훈	련과정명				
훈	련기관명				
1	연락처				
	소재지				
주요 교과목 및 내 용					
취득	희망 자격증				
자격 경	증 시험일정				
	현기간				
훈련임	일수/총 시간				
한	련비총액				
자	기부담액				
※ 신청]한 훈련 분야도	· 모집하는 구인	정보를 탐색하여	기재 (구인정보 검색하여 3개 모두	· 작성)
	구인업체명				
	모집직종				
수료후 지원 가능한 현재의 정보 탐색	소재지				
	구인조건 (모잡인원, 경력, 나이, 자격증, 급여조건 등)				
	구인등록일, 검색한 사이트				

- 훈련과정 탐색방법 : www.hrd.go.kr - 구인정보 탐색방법 : www.work.go.kr

(※구인정보 탐색은 워크넷 뿐 아니라 다른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이용 가능)

훈련계획 수립 및 자격증정보 탐색 결과표 (작성예시)

※ 동일한 훈련 분야로만 작성 (동일 분야로 2개 과정까지 계획수립 가능)하고, 탐색 결정한 훈련기관의 과정만 수강 가능

훈련과정명	【일반고 특화】항공기관(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E (AIG20200000278458)			
훈련기관명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연락처	032-518-0071			
소재지	(21413)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50, 52			
주요 교과목 및 내 용	(NCS) 항공기 왕복엔진정비, 항공기 기체정비, 항공기 전기.전자장비정비 (비NCS이론) 항공기 기관, 항공기 기체, 항공기 전자장비, 항공기 일반, 비행원리 (비NCS실기) 항공기 기관실습, 항공기 기체실습, 항공기 전자장비실습 (NCS소양)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원관리능력 (비NCS교양) 노동인권교육, 일반고 직업기초프로그램			
취득희망 자격증	항공기관정비기능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필기 접수일: 2020.09.08~2020.09.11 / 필기 시험일: 2020.10.11~2020.10.17 실기 접수일: 2020.10.26~2020.10.29 / 실기 시험일: 2020.11.28~2020.12.13			
훈련기간	2020. 8. 18. ~2021. 1. 13.			
훈련일수/총 시간	1일 6.5 시간 / 6개월			
훈련비총액	3,753,600원			
자기부담액	0원			

※ 신청한 훈련 분야로 모집하는 구인정보를 탐색하여 기재 (구인정보 검색하여 3개 모두 작성)

	구인업체명	㈜샤프테크닉스케이	에어인천(주)	㈜티아이에스코리아
	모집직종	항공기정비	정비본부 정비기술팀	항공정비부문
수료후 지원	소재지	인천 중구	인천 중구	서울 마포구
지원 가능한 현재의 구인 정보 탐색	구인조건 (모잡인원, 경력, 나이, 자격증, 급여조건 등)	모집인원 1명, 경력 5년 이상(차장,부장,팀장급), 나이 무관, 급여 협의 후 결정	모집인원 0명, 학력·나이 무관, 한정 면장 소지자 우대, 항공공학 전공자 우대, 급여 회사내규 따름	모집인원 00명, 초대졸 이상, 경력 3년 이상, 항공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항공학 전공 우대, 주급 1백 만원
	구인등록일, 검색한 사이트	2020.06.23. 사람인	2020.07.20. 사람인	잡코리아

- 훈련과정 탐색방법 : www.hrd.go.kr- 구인정보 탐색방법 : www.work.go.kr

(※구인정보 탐색은 워크넷 뿐 아니라 다른 직업정보제공사이트 이용 가능)